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13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다.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1) 삭제 <2020. 3. 3.>
- 2)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·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4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5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
- 6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라.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. 다만,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33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- 1)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해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- 2)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(단위: 만원)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험동물의 처분	법 제33조제1항	300	300	300

<p>험동물운영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지 않은 경우</p>	<p>항제1호</p>			
<p>나. 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</p>	<p>법 제33조제1항제2호</p>	150	225	300
<p>다. 법 제8조에 따른 등록·변경 등록 또는 변경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</p>	<p>법 제33조제2항제1호</p>			
<p>1)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</p>		100	100	100
<p>2)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</p>		50	75	100
<p>3)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</p>		30	50	100
<p>라.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</p>	<p>법 제33조제2항제1호의2</p>	30	50	100
<p>마. 법 제13조제3호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</p>	<p>법 제33조제2항제5호</p>	50	75	100
<p>바.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부착하거나 이를 홍보한 경우</p>	<p>법 제33조제2항제2호</p>	50	75	100
<p>사. 동물실험시설 운영자, 관리자, 또는 실험동물공급자가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</p>	<p>법 제33조제2항제3호</p>	30	50	100
<p>아. 법 제18조제2항·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</p>	<p>법 제33조제2항제4호</p>	50	75	100